

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. 10. 30 선고 2024가단54357 판결 [공사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로

담당변호사 이성민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현동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10. 16.

판 결 선 고 2024. 10. 3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59,25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. 3. 19.부터 2024. 9. 7.까지는 연 6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인정근거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김현준

별지